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75호 2020. 11. 4(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제2020-12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54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
 제2020-121호 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제2020-1383호 말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7
 제2020-1389호 공시송달공고 12
 제2020-1390호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3
 제2020-1393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제2020-139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제2020-1398호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3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74호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9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54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7-152호(2017.12.07.)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중로1-54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0. 10. 30.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시점	종점		
도시계획시설	대평리 우회도로(중로1-54호선) 개설공사	거창	대평	중로	1	54	1,190	20	27,066	거창읍 대평리 946-2	거창읍 대평리 440-71	거창군 고시 제2017-152호(2017.12.07.)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중로 1 - 54호선(대평리 우회도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1	대평리	946-2	답	1,372		거창군	
2	대평리	993-4	답	600		배*주	
3	대평리	598-1	도	47		국(농림수산부)	
4	대평리	684-4	답	25		거창군	
5	대평리	679	답	337		거창군	
6	대평리	680	답	202		거창군	
7	대평리	677-2	답	579		거창군	
8	대평리	677-3	답	496		김*호	
9	대평리	676-1	답	513		거창군	
10	대평리	675-1	답	441		거창군	
11	대평리	10-2	구	379		국(농림수산부)	
12	대평리	674-1	답	490		거창군	
13	대평리	673-1	답	513		거창군	
14	대평리	672-4	답	501		거창군	
15	대평리	672-3	답	507		김*애외 3명	
16	대평리	660-2	답	526		거창군	
17	대평리	671-1	답	12		거창군	
18	대평리	595-1	도	121		국(농림수산부)	
19	대평리	660-4	답	167		거창군	
20	대평리	660-5	답	707		거창군	
21	대평리	659-1	답	480		김*애외 3명	
22	대평리	658-1	답	498		김*애외 3명	
23	대평리	657-1	답	505		김*애외 3명	
24	대평리	656-1	답	840		거창군	
25	대평리	655-1	답	349		거창군	
26	대평리	654-1	답	825		거창군	
27	대평리	653-1	답	534		거창군	
28	대평리	652-1	답	243		거창군	
29	대평리	651-1	답	735		거창군	
30	대평리	650-1	답	696		이*순	
31	대평리	649-3	답	682		거창군	
32	대평리	431-10	답	502		거창군	
33	대평리	431-9	답	473		거창군	
34	대평리	431-8	답	410		거창군	
35	대평리	1468-5	도	125		국(국토교통부)	
36	대평리	428-5	답	490		거창군	
37	대평리	427-4	답	497		거창군	
38	대평리	426-1	답	966		이*순	
39	대평리	425-1	답	322		거창군	
40	대평리	1468-6	도	42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1	대평리	410-1	답	4		거창군	
42	대평리	406-1	답	2,120		거창군	
43	대평리	1468-2	도	23		국(국토교통부)	
44	대평리	7-18	도	134		국(농림수산부)	
45	대평리	394-3	답	80		거창군	
46	대평리	392-1	답	1,041		거창군	
47	대평리	392-2	답	15		거창군	
48	대평리	1512	도	503		거창군	
49	대평리	1452-71	구	7			
50	대평리	432-9	답	509		거창군	
51	대평리	432-10	답	108		거창군	
52	대평리	432-1	답	189		거창군	
53	대평리	434-9	답	187		거창군	
54	대평리	434-10	답	29		거창군	
55	대평리	434-1	천	34		국(농수산부)	
56	대평리	434-5	천	53		국(농림축산식품부)	
57	대평리	441-132	임	17		거창군	
58	대평리	441-131	임	19		거창군	
59	대평리	441-157	대	234		거창군	
60	대평리	441-154	대	179		거창군	
61	대평리	441-156	잡	337		거창군	
62	대평리	441-158	임	22		거창군	
63	대평리	441-159	잡	9		거창군	
64	대평리	441-160	대	32		거창군	
65	대평리	441-161	임	4		거창군	
66	대평리	441-153	잡	113		거창군	
67	대평리	441-118	전	154		거창군	
68	대평리	1452-74	창	389		국(기획재정부)	
69	대평리	1452-75	잡	95		국(기획재정부)	
70	대평리	440-70	전	658		거창군	
71	대평리	440 -71	전	1,826		거창군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밤티재로 258-34 등 7건
- 변경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020-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밤티재로 258-34	20091228	20201104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1길 18-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	20091228	20201104	1994년 거창읍시가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변경
3	경상남도 거창군 고계면 개명리 152	경상남도 거창군 고계면 쾌암길 22-5	20090401	20201104	마을 뒤 농삿길에 긴 돌이 길가운데 걸려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산5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3길 98-344	20091228	20201104	양기.읍기를 텃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328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촌2길 162-16	20090401	20201104	1550년께 하빈이씨가 열었다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693-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1길 23-51	20090401	20201104	행정구역명 마상리가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33	20090401	20201104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656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어인안길 170-40	20090401	20201104	어진 사람이 많이 날 것이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말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말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말흘천 정비사업
- 나. 위 치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일원
- 다. 사 업 량 : 하천정비 L=566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353-2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64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익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87,192	12,110					
1	마리면 말흘리	384-10	천	220	59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07	이O재			
2	“	1392-1	구	586	258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3	“	353-2	답	2,584	79	거창군 마리면 송림길 192	박O수			
4	“	353-4	천	80	80	거창군	공유지			
5	“	400-28	천	313	278	거창군	공유지			
6	“	1388-2	도	137	54	국토교통부	국유지			

7	“	400	답	769	174	대구시 서구 당산로47길 113	김O필외2인			
8	“	353-3	천	322	322		김O기			
9	“	354-1	답	3,761	17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5	박O배			
10	“	354-3	답	31	31	거창군	공유지			
11	“	354-2	구	188	188	거창군 월계리	이O봉			
12	“	400-12	답	578	80	경북구미시공단동365-11 서통사원아파트가동101호	김O봉외1인			
13	“	400-31	천	67	67	거창군	공유지			
14	“	1388-4	도	136	136	국토교통부	국유지			
15	“	355-4	구	298	236		이O모			
16	“	400-29	천	82	69	거창군	공유지			
17	“	381-1	구	163	163		이O재			
18	“	355-8	답	1,332	13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765-17	김O솔			
19	“	400-30	천	85	39	거창군	공유지			
20	“	355-10	천	47	47	거창군	공유지			
21	“	355-3	답	2,907	56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418	김O인			
22	“	382	구	18,589	327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3	“	755	도	1,317	17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4	“	790-11	답	373	80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62-4	빈O덕			
25	“	790-25	천	94	94	거창군	공유지			
26	“	376	천	76	76	거창군	공유지			
27	“	375	천	18	18	거창군	공유지			
28	“	210	도	821	48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9	“	1391	도	65	52	국토교통부	국유지			
30	“	374	천	132	132	거창군	공유지			
31	“	783	구	104	15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32	“	산 28-11	천	187	106	거창군	공유지			
33	“	790-24	천	14	14	거창군	공유지			
34	“	산28-1	임	507	151	거창군 마리면 송림길 145	이O봉			

35	“	790-23	천	171	171	거창군	공유지			
36	“	790-9	답	2,256	73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026	신0자			
37	“	373	천	186	163	거창군	공유지			
38	“	790-22	천	108	108	거창군	공유지			
39	“	790-8	답	3,257	128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77-5	표0조			
40	“	751	구	157	131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41	“	750-10	답	152	152	거창군	공유지			
42	“	790-21	천	469	469	거창군	공유지			
43	“	790-6	답	2,055	199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77-5	표0조			
44	“	750-9	답	196	196	거창군	공유지			
45	“	790-20	천	186	186	거창군	공유지			
46	“	790-5	답	3,865	149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813-3	오0식			
47	“	750-8	답	170	170	거창군	공유지			
48	“	790-4	답	1,091	41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61-7	전0렬			
49	“	790-19	천	50	50	거창군	공유지			
50	“	790-3	답	2,684	46	거창군 마리면 원말흘1길 26-32	김0아			
51	“	790-18	천	46	26	거창군	공유지			
52	“	740	구	400	170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53	“	1392	구	21,192	4,007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54	“	786	답	884	249	거창군 마리면 원말흘2길 13.8	김0근			
55	“	782-1	답	2,857	703	부산시 사상구 괘감로 93-1	김0순외2인			
56	“	785	답	987	590	거창군 마리면 원말흘2길 13-8	김0근			
57	“	368-11	답	2,914	274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009	김0곽			
58	“	1388	도	3,876	83	국토교통부	국유지			

<붙임 : 의견서 >

『말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2020. .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직권말소,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2. ~ 2020. 11. 20.
3. 공고대상 : 50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0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거창군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정의·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온종일돌봄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조)
- 온종일 돌봄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 비용부담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10조)
- 지역돌봄협의체 기능·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11조~제1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1. 2. ~ 2020. 11. 23. (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 전 화 : 055-940-3780
 - 팩 스 : 055-940-373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 940-3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은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나 다음 달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제6조의 교육·보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온종일 돌봄 지원사업)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보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교 전 돌봄,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휴일 돌봄, 긴급 돌봄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 ② 군수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온종일 돌봄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온종일 돌봄 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종일 돌봄을 우선 지원한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3.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 수
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온종일 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온종일 돌봄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온종일 돌봄 비용부담)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가. 돌봄 아동의 급식·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 나. 돌봄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비용 등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대상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
2.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3. 온종일 돌봄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돌봄 아동의 급식비 또는 간식비
5.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또는 지역 내 연계·협력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3.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장, 거창교육지원청 초등돌봄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2. 온종일 돌봄 관련 전문가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협력 온종일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거창군 공고 제2020-1393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가. 신규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과관리담당, 청년정책담당, 산림레포츠담당, 힐링랜드운영담당, 감염병대응담당, 정신건강담당 등을 신설하고, 규제개혁담당을 규제혁신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함
- 나. 재난안전 전담인력,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거창창포원, 향노화 분야 등 국가 및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장 사무분장 변경(안 제5조제2항제3호·제6조제2항제3호)
 - 1) 행정복지국장: 청년정책 신설
 - 2) 경제산업국장: 산림레포츠, 힐링랜드운영 신설

나. 정원 조정(안 제25조)

1) 총수 증37명: 730명 → 767명

2) 집행기관 증37명: 716명 → 753명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34명

가) 현행: 656명(본청309, 의회11, 직속기관108, 사업소37, 읍40명, 면151)

나) 조정: 690명(본청323, 의회11, 직속기관118, 사업소37, 읍41, 면160)

2) 지도직(지도사) 정원 증3명

가) 현행: 25명(본청 0, 직속기관25)

나) 조정: 28명(본청 1, 직속기관27)

4. 소요예산 : 21년도 증원 인력 예산 607,223천원 확보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hyungoing@korea.kr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인구정책, 교육진흥”을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항노화 등”을 “항노화, 산림레포츠, 힐링랜드운영 등”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730명”을 “76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6명”을 “753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행정복지국) ① (생략)</p> <p>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u>인구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u></p> <p>4.~8. (생략)</p>	<p>제5조(행정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u></p> <p>4.~8. (현행과 같음)</p>
<p>제6조(경제산업국) ① (생략)</p> <p>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u>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향노화 등 산림에 관한 사항</u></p> <p>4.~6. (생략)</p>	<p>제6조(경제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향노화,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u></p> <p>4.~6. (현행과 같음)</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30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16명</u></p> <p>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67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53명</u></p> <p>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p>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67 730	346 331	14	153 141	69 67	84 74	41	42 41	171 162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32 698	341 327	14	124 114	40	84 74	40	42 41	171 162
	4급	3	3							
	4~5급	2			1		1		1	
	5급	37	15	3	5	4	1	3		11
	6급 이하	690 656	323 309	11	118 108	36	82 72	37	41 40	160 151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8 25	1 0		27 25	27 2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0-139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재난안전 전담인력,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거창 창포원, 향노화 분야 등 국가 및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의 분장사무 변경(안 별표 2)
 -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1) 일반직 6급 정원 증6명
 - 가) 본청 6급 증4명(행정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 나) 직속기관 6급 증2명(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 2) 일반직 7급 정원 증13명
 - 가) 본청 7급 정원 증4명
 - (1) 증원 8명(행정2, 행정·공업1, 행정·방재안전1, 행정·농업·녹지·시설1, 운전·위생·방호2, 전기운영·기계운영1)
 - (2) 감원 4명(기계운영1, 운전1, 위생1, 사무운영1)

나) 직속기관·사업소 7급 정원 증4명

(1) 증원 8명(간호2, 보건진료1, 보건·의료기술·간호3, 전기운영·기계 운영1, 기계운영·운전·위생·방호1)

(2) 감원 4명(의료기술1, 보건·간호1, 기계운영1, 방호1)

다) 읍·면 7급 정원 증5명

(1) 증원 6명(행정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시설1, 행정·농업·녹지·시설1)

(2) 감원 1명(전기운영1)

3) 일반직 8급 정원 증9명

4) 일반직 9급 정원 증6명

5) 지도직 정원 증3명

4. 소요예산 : 21년도 증원 인력 예산 607,223천원 확보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hyungoing@korea.kr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분장사무(제7조관련)

1.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분장사무
기획예산 담당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의 기획·조정·통제 업무 2. 군정시책 종합평가 업무 3. 군정 중장기 계획수립 업무 4. 공약사업과 지시, 현안사항 종합관리 업무 5. 군 의회 운영 협력·지원·조정 업무 6. 부서별 업무계획 수립 총괄 7. 적극행정 업무 총괄 8.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 뉴딜정책 총괄 9. 군정종합 우수시책 대외 응모 10. 공보·홍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업무 11.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 및 언론 보도내용 분석 관련 업무 12. 군정 종합 기획홍보 관련 업무 13. 보도자료 작성 배포와 브리핑룸 관리 업무 14. 언론 매체 관리에 관한 업무 15. 군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16. 지방채 등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업무 17. 예산사업의 투자 심사에 관한 업무 18. 지방재정의 종합기획과 지방공기업·경영수익사업 관한 업무 19. 사업별 예산편성 운영 20.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업무 21. 보조사업에 관한 업무 22. 예산운용에 관한 업무 23. 감사계획의 수립·감사와 특정감사 등에 관한 업무 24.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25. 법규위반 비위공무원 조사·처분과 고충민원 처리 26.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윤리업무와 면책·소청 심사 관련 업무 27. 계약심사, 일상감사 운영 28.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훈령·예규에 관한 업무 29. 소송, 행정심판 관련 업무 30. 인구동태 조사와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31. 정책수립과 성과측정에 필요한 행정통계에 관한 업무 32. 외국인 통계와 관리에 관한 업무 33. 규제 종합계획 수립과 규제개선에 관한 업무 34. 혁신업무 총괄 35. 그 밖에 기획, 공보, 예산, 감사 및 규제개혁혁신에 관한 업무

2. 행정복지국

부서	분장사무
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행사·의전 총괄 업무 2. 공무원 인사·상훈·조직·교육에 관한 업무 3. 공무원 정·현원 관리,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정·현원 4. 공무원 징계에 관한 업무 5. 지방행정구역 조정, 읍·면 행정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6. 군민화합·의식개혁운동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업무 7. 주요시책 추진 8. 일제강점 피해 관련 업무 9. 공무원 해외여행 등 공무원 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10. 선거에 관한 업무 11. 서무, 공인관리, 보안에 관한 업무 12. 문서통제, 우편물 수발, 사무관리에 관한 업무 13. 공무원 보수·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14. 공무원단체 운영지원, 공무원노조에 관한 업무 15.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 16.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17. 기록물 관리·수집·보존·활용에 관한 업무 18.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업무 19.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에 관한 업무 20. 주민투표, 지방분권,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지방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21. 기관·단체 현황관리, 주요단체 등 대외협력·지원에 관한 업무 22. 군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 23. 공통기반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업무 24.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25. 그 밖에 다른 담당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미래전략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안·역점사업,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2. 공모사업 총괄 3.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4. 창업, 공장설립 승인 관련 업무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기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7. 산업·농공단지 조성·관리 업무 8.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에 관한 업무 9. 승강기산업 관련업체, 유관기관 유치와 지원에 관한 업무 10. 투자 프로젝트사업 개발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국내·외 기업, 산업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미래전략,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인구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정책업무 전반 2. 인구증가 종합계획 수립 3. 저출산·고령·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4.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시책 발굴·추진 5. 청년정책 업무 총괄 6. 교육발전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 업무 7. 인재육성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8. 초·중·고·대학 육성지원 업무 9.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 10.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 11.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 12. 청소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3. 도서관 관리·운영 업무 14. 그 밖에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도서관에 관한 업무
민원소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사무 접수·처리 부서 종합조정에 관한 업무 2. 민원업무연구, 시책개발에 관한 업무 3. 창구민원 즉결 처리 관련 업무 4. 인터넷민원, G4C민원, 여권, 행정정보공개, 국민신문고 업무 5.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6.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지적공부 보존관리 업무 8.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업무 9.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업무 10.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 업무 11.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12.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업무 13.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14.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업무 15.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업무 16. 공간정보 관련 업무 17. 식품접객업 관리 업무 18.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리 업무 19. 공중위생업 관리 업무 20. 위생면허 관리 업무 21.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22.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p>23. 도해지적 수치화 업무</p> <p>24. 지적확정측량 업무</p> <p>25. 그 밖에 민원, 지적, 토지정보, 위생, 지적 재조사에 관한 업무</p>
재무과	<p>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업무</p> <p>2. 세원발굴,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p> <p>3.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p> <p>4.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p> <p>5. 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에 관한 업무</p> <p>6.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산에 관한 업무</p> <p>7. 세외수입 징수·지도, 체납징수 총괄 관리에 관한 업무</p> <p>8. 세입금 관리와 결산에 관한 업무</p> <p>9.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p> <p>10. 국채와 지방채 소화에 관한 업무</p> <p>11. 자금배정, 자금운영에 관한 업무</p> <p>12.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에 관한 업무</p> <p>13.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p> <p>14. 물품구입, 출납보관 관리에 관한 업무</p> <p>15. 청사, 관사 관리에 관한 업무</p> <p>16.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관한 업무</p> <p>17.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조사, 결정에 관한 업무</p> <p>18.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에 관한 업무</p> <p>19.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업무</p> <p>20. 그 밖에 부과, 경리, 세입관리, 재산관리, 부동산평가에 관한 업무</p>
문화관광과	<p>1.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예술 활동 지원 업무</p> <p>2. 향교 및 종교단체의 지원 관리</p> <p>3. 군지, 향지 편찬에 관한 업무</p> <p>4. 공연장, 공연에 관한 업무</p> <p>5. 문화산업에 관한 업무</p> <p>6. 거창문화재단, 거창문화원에 관한 업무</p> <p>7. 관광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업무</p> <p>8. 거창한마당축제 관련 업무</p> <p>9. 관광상품 및 관광홍보에 관한 업무</p> <p>10.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p> <p>11. 온천지구 지정, 개발관리 업무</p> <p>12. 관광자원 개발</p> <p>13.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p> <p>14. 매장문화재 등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 업무</p> <p>15. 천연기념물 관련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 17. 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 18. 근대의료박물관 운영에 관한 업무 19. 수송대 운영에 관한 업무 20. 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업무 21.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정책, 관광시설, 문화재, 박물관, 수송대에 관한 업무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2.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업무 3. 아립1004운동 추진에 관한 업무 4.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관리와 운영 5.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6.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리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8.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체 지원 9. 긴급지원 및 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11. 복지대상자 신규·변경 신청 조사 12. 사회보장급여 자격 변동, 사후관리 13.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관리 15.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급여지원 16. 저소득층 복지지원 17. 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자활근로사업관리 18.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1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20. 그 밖에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기초생활에 관한 업무
행복나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 시설, 단체 관련 업무 2. 노인사회참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3.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전반 4. 장기요양관련 업무 전반 5.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 6.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업무 7.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 8. 장애인복지 시설, 단체 운영에 관한 업무 9. 장애인자립, 사회참여활동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관련 업무 11. 여성권익신장,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12.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업무 13.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업무 14. 보육료지원에 관한 업무 15. 어린이집 설치·인가·관리에 관한 업무 16.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17.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에 관한 업무 18.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업무 19.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업무 20. 가정위탁,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2. 그 밖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드림아동에 관한 업무
--	--

3. 경제산업국

부서	분장사무
경제교통과	1.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육성 관련 업무 3.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업무 4.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5. 공산품 품질관리 관련 업무 6. 통상진흥 관련 업무 7. 담배소매인 등록 관련 업무 8. 통신·방문판매업 관련 업무 9.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업무 10. 노동단체관리 업무 11. 대부업·저축·금융기관 관리 관련 업무 12. 문화거리 활성화, 유지관리 관련 업무 13. 공예품, QC상품관리 관련 업무 14. 일자리 발굴, 추진 관련 업무 15. 채용박람회, 일자리안정자금 등 관련 업무 16. 전기, 석유, 가스, 수소 등 에너지관리 관련 업무 17. 태양광, 광업권 관련 업무 18. 교통안전 관련 업무 19. 교통질서 계도, 단속 관련 업무 20. 여객, 화물자동차 관리 관련 업무 21. 여객운수업 재정지원 관련 업무 22. 그 밖에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총괄, 에너지, 교통에 관한 업무

<p>안전총괄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안전, 재난관련 종합기획·조정, 평가 등 총괄에 관한 업무 2.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3. 재난상황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업무 4. 유·도선장 관리 업무 5.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6. 실종 등 인적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7.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대책수립 추진 업무 8.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9. 유관 기관단체 재난관련 협의 조정 업무 10. 재해영향성평가 업무 11.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업무 12.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안전점검·관리업무 13. 방재 전산훈련 업무 14. 안전문화운동 전개, 교육 홍보 업무 15.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관련 업무 16. 120기동대, 자원봉사대 운영관련 업무 17. 생활불편해소 관련 업무 1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19. 민방위계획수립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업무 20.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업무 21. CCTV관제에 관한 업무 22. 행정통신망,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23. 그 밖에 안전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관제에 관한 업무
<p>산림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2.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관한 업무 3. 토석·토사 채취 허가 관련 업무 4. 양묘, 조림사업, 사방사업 관련 업무 5. 단기임산물 관련 업무 6. 산지소득, 임업단체 관련 업무 7. 화강석 특화 육성 관련 업무 8. 보안림 지정·해제 관련 업무 9. 산지전용허가, 변경 관련 업무 10.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산림사범 관련 업무 11. 불법 산림훼손에 관한 업무 12. 산림병해충 관련 업무 13. 임도시설 관리 관련 업무 14. 산림경영계획 관련 업무 15. 제재소 지도·감독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산불예방, 진화 관련 업무 17.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및 보호 관련 업무 18. 도시공원·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19. 가로수 식재·관리 관련 업무 20. 푸른 거창가꾸기 관한 업무(푸른경남 및 생활주변 나무심기) 21. 녹지공간 조성·관리 업무 22. 꽃길·꽃동산 조성·관리 업무 23. 향노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 24. 향노화 힐링 특구 관련 업무 25.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 26. 산림 내 편의시설에 관한 업무 27. 치유의 숲, 등산로(숲길) 조성·관리 2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업무 <u>29.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관련 업무</u> <u>30.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업무</u> <u>31.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업무</u> <u>32. 힐링랜드 야외시설 운영 관리 업무</u> <u>33. 그 밖에 산림조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향노화, 산림레포츠파크, 향노화힐링랜드에 관한 업무</u>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본계획, 환경정책에 관한 업무 2. 대기, 소음·진동, 토양, 악취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 3.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4.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업무 5. 탄소포인트 제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사범 수사 7. 미세먼지 감축 추진 사업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소각시설 위탁 운영 관리 10. 생활·건설·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 11. 사업장폐기물(일반, 지정, 의료) 관련 업무 12.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관리 13. 영농폐기물(집하장 등) 시설물 설치·관리 14. 수질보전, 수질개선 업무 추진 15. 낙동강수계주민지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16. 분뇨,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18.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19. 지하수 관리업무 추진 20.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등 자연보호 업무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야생 동·식물 관리 및 보호 22. 생태습지원, 생태공원 관리 23.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관리업무 추진 24. 창포원, 국화원, 연꽃수련원 등 수변생태공원 관리 25. 방문자센터, 온실 등 유지 관리 26.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운영 27. <u>그 밖에</u> 환경정책, 자원순환, 수질관리, 자연환경, 창포원에 관한 업무
<p>건설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업 관리 업무 2.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업무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업무 4.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업무 5. 보상에 관한 업무 6. 건설기계 관리감독 관련 업무 7. 농지개발사업계획 수립·시행 업무 8. 농업용수개발, 개·보수사업 추진 업무 9.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업무 10. 농업기반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개 개선 업무 11.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업무 12. 한해대책, 장비 유지관리 업무 13. 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14. 하천공사 시행관련 업무 15. 하천의 개량·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 16.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업무 17.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시행 업무 18.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19. 도로굴착 점용 허가, 점용료 부과 업무 20. 교량 유지, 사도관리에 관한 업무 21. 과적차량 단속 업무 22. <u>그 밖에</u> 건설, 농업기반, 하천, 도로에 관한 업무
<p>도시건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기본계획·관리계획의 입안과 시행 관련 업무 2. 군계획시설 사업 관련 업무 3. 개발행위 허가·협의, 불법개발행위 관련 업무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관련 업무 5.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 6.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관련 업무 7. 군계획구역내 도시정비 관련 업무 8.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설치 관련 업무 10.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관련 업무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관련 업무 12.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관리 관련 업무 13.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 14. 주거 급여 관련 업무 15.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업무 16.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관련 인·허가 관련 업무 17. 농지전용협의·허가, 용도변경 관련 업무 18.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업무 19.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관련 업무 20.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준비, 사업추진 관련 업무 21.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 협의체 등 운영 관련 업무 22.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도시경관 계획 관련 업무 23. 친환경 녹색 건축물 사업 추진 관련 업무 24. 그 밖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행정, 건축민원에 관한 업무
--	---

4.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장사무
농업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 내 직원 인사·복무·회계·예산 운영 관련 업무 2. 농정시책 및 사업의 확인, 심사, 분석, 평가 3. 물품과 재산 관리 업무 4. 농업·농촌발전 대책 관련 업무 5. 농지보존, 불법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 6. 농림사업 계획 수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관련 업무 7. 농산물 대축제 관련 업무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업무 9. 수입개방 대응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시책 발굴 추진 관련 업무 10. 자유무역협정 농수축산업 대책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관련 업무 11.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종합대책 관련 업무 12. 농업발전기금, 진흥기금 관련 업무 13. 강소농과 농업경영개선 지원 업무 14. 지도·연구공무원 능력 향상에 관한 업무 15. 농산물 소득조사 업무 16. 농업인단체·농업인학습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17.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관련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농업인 영농교육, 농업인대학 관련 업무 19.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 업무 20.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관련 업무 21. 후계 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 관리 업무 22.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관련 업무 23. 축산물 기반조성 및 유통개선사업 관련 업무 24. 축산단체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25. 가축개량 및 송아지 생산 관련 업무 26. 조사료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 업무 27. 내수면 어업, 수산물 관련 업무 28. 축산 재해, 생산이력제 사업 관련 업무 29. 친환경축산, 축산분뇨 처리 관련 업무 30. 경관보전직불 업무 31. 가축방역 대책,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업무 32. 도축장 시설 설치·지원·관리에 관한 업무 33. 유기동물 등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34. 공수의 관리, 동물병원·약국 관리 관련 업무 35. 축산물 판매·유통 대책 관련 업무 36.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축산 시범사업 관련 업무 37. 농업기계화사업 관련 업무 38. 그 밖에 농정, 농업지원, 축산, 가축방역, 농기계에 관한 업무
농업기술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 2. 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관련 업무 3. 식량작물 보급중 공급, 채종단지 운영 관련 업무 4.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관련 업무 5. 농약·비료 관리 및 지원 관련 업무 6. 농촌일손 돕기, 농업재해 업무 7. 정부 양곡관리 관련 업무 8. 원예, 특작분야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 관련 업무 9. 원예 특작 적정 생산 계획, 기술지도 업무 10. 종자산업법 관련 업무 11. 특화작목 육성, 시설물 재해대책 관련 업무 12. 잠업 생산 지원 및 실증시험 업무 13. 과수재배 기술보급·지원 관련 업무 14. 거창 사과 딸기 산업특구 관련 업무 15. 사과테마파크, 사과이용체험센터 관리운영 업무 16. 농작물 재해보험, 거창명품사과 홍보 관련 업무 17. 과수 시범사업, 병해충 예방방제 관련 업무 18. FTA기금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 탐프루트 시범단지 육성 및 관원관리 IPM사업 업무 20.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21. 친환경농업 및 토종농산물 직불금 관련 업무 22.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및 시범사업 관련 업무 23. 친환경 비료 지원에 관한 업무 24.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련 업무 25. 천적생태과학관 관련 업무 26. 실증시범포 운영 관련 업무 27. 조직 배양실 운영 관련 업무 28. 농약잔류검사 및 토양정밀 검정에 관한 업무 29. 가축분뇨퇴비 부속도 검사 업무 30. 그 밖에 식량작물, 원예특작, 과수,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업무
행복농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복농촌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총괄·조정 2.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역량강화 교육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4. 마을만들기 관련 DB구축과 법령·제도 개선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공모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 사후유지 관리 7.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8. 농산물 수출 종합대책, 해외시장개척 9. 수출농가·수출업체 육성과 수출활성화 지원 업무 10. 산지유통 종합계획 추진 11. 서북부경남 산지유통센터(APC)운영·지원 관련 업무 12. 산지유통시설 관련 업무 13. 산지유통·통합마케팅 고도화 전략 수립 14. 통합마케팅 조직과 공선출하조직육성 관련 업무 15. 농산물공동브랜드(거창韓) 육성·지원 관련 업무 16.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육성·지원 업무 17. 농산물 물류 표준화, 원산지표시, 생산이력제 업무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 19.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지원센터 운영 20.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업무 21.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업무 22. 향토음식, 전통주 육성 관련 업무 23. 귀농·귀촌 관련 업무 24. 귀농귀촌인 상담센터 운영 25. 도시민농어촌유치지원 관련 업무 26. 농촌민박 및 관광농원 관련 업무

	27. 농촌체험 및 사이버농원 육성·지원 관련 업무 28. 거창푸드플랜 수립·시행 29.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30. 학교급식 지원 관련 업무 31.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관리 32.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업무 33. 농산물직거래 장터, 거창군 쇼핑몰 관련 업무 34. 그 밖에 농촌진흥, 농촌개발, 수출유통, 농촌융복합, 귀농귀촌, 지역식품에 관한 업무
--	---

5. 사업소

부서	분장사무
수도사업소	1.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2. 상·하수도·하수처리장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에 관한 업무 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4.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간이급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6.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8.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9. 취·정수장 운영에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업무
체육시설사업소	1. 체육진흥 종합 기획·조정 2. 체육단체 육성에 관한 사무 3. 체육시설업, 수상레저사업 지도 관리 4. 골프장 개발 관리 5. 스포츠파크 총괄 운영 관리 6. 체육시설 유지·관리, 개발에 관한 사무 7. 읍면 체육시설(운동기구) 총괄 관리 8.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9.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 10. 체육지도자, 시설전문관리인 채용 및 운영 관리 1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업무 12.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13.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14.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스포츠 마케팅에 관

	한 업무
거창사건 사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사건사업소 운영계획 수립과 종합조정 2. 위령제, 추모식 등 각종 문화행사 기획운영 3. 거창사건사업소 시설물 유지 관리 4. 국화전시회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거창사건에 관한 업무

6. 읍·면

부서	분장사무
읍·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리 지도 관련 업무 2. 선거 및 통계 관련 업무 3. 세입징수 및 독려 관련 업무 4. 세원조사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6.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관련 업무 7. 민방위 관련 업무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업무 9.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복지 관련 업무 1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11. 농업, 축산, 산림, 경제 관련 업무 12. 소규모 주민사업 관련 업무 13. 광고물 관리 업무 14. 재난·재해 관련 업무 15.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16. 그 밖에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

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2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688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20.1.1.시행)’ 관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연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대리참석 규정
 - 교육의 통지에 관한 사항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1. 2. ~ 2020. 11. 23. (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 화 : 055-940-3410
- 팩 스 : 055-940-340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940-34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거창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거창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거창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생략)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1. 1.] 제11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20. 9. 8.>[시행일 : 2021. 1. 1.] 제5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 개정이유
 - 농촌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침을 준수하고, 지역의 다양한 활동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마을만들기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
 - 1) 현행 : 지원센터 위탁
 - 2) 신설 : 마을만들기 업무 위탁
4. 입법예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9.(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11. 19.(목)

나. 제출방법 : 방문(평일 근무시간 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 50147
- 전화 : 055)940-8280, FAX: 055)940-8229
- 이메일 : qudans@korea.kr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 조 례 명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0조(지원센터의 위탁)</u>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p> <p>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u>제20조(위탁 운영)</u>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항 삭제)「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3항 삭제) 위탁협약서에 규정할 사항임</p> <p>⇒(제4항 삭제)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파견하면됨. 조례위임사항 아님</p> <p>⇒(제5항 삭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되어있어 개별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없음</p>
<p><u>제21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법제처 정비대상 「지방자치법」제23조(규칙) 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없이도 규칙 제정가능</p>